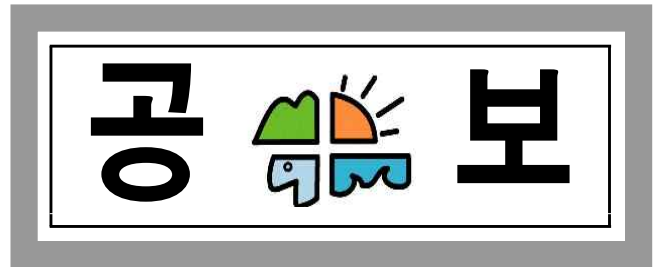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694호 2012년 4월 13일(금)

조 례

- 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규 칙

-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

공 고

-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정 입법예고..... 9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4월 13일

속초시조례 제2293호

속초시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속초시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와 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조기발견
2. 비용 지원에 따른 관련기관 협력 체계구축

3. 시술 후 건강관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2급 이상의 신장장애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다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의료급여를 수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신장장애인으로 혈액 및 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자료요청) ① 시장은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2.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타당성

3. 지원비 적정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1. 장애인 의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애인 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장
3.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장애인 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 이 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2. 질병 및 그 밖에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4월 13일

속초시규칙 제1285호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2조 본문중 “조례”를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내”를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장학생 신청자격)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으로 성적이 우수하여 각 학교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 이 경우 속초시는 각 학교별로 선발 인원을 배정하고 장학생 선발 결정은 장학회에서 한다.

2.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모범학생

3. 고등학교 내신 성적 2등급 이내의 성적으로 지역 또는 일반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 신입생과 직전(直前)학년 성적이 평점 4.0 이상인 지역 또는 일반대학교 재학생. 단 휴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4. 예능·체능분야는 전국단위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대회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단, 직전학년 재학기간 중 상위입상 1개 부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국단위 대회란 주최가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중앙단위 단체(협회)이며, 도단위 대회란 주최가 도지사, 도교육감 및 도단위 단체(협회)를 말한다.

제7조중 “다음 각 호의 1”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규칙은 <u>속초시에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규칙은 「 <u>속초시에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u>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회 구성) ① <u>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에향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 이하 생략 ~	제2조(장학회 구성) ① 「 <u>속초시에향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u>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에향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는 회장, 부회장 각 1 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이하 생략 ~
제5조(장학생의 신청자격) <u>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u> 1. <u>중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3 이내의 학생으로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모범 고등학생</u> 2. <u>직전(前) 학년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모범 고등학생</u> 3. <u>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3 이내의 대학교 신입생 또는 직전(前) 학년 성적이 평점 4.0이상인 대학생</u> 4. <u>지역대학에 1년 이상 재학하고 있는 대 학생중 직전(前)학년 성적이 평점 4.0이상인 대학생</u> 5. <u>재학기간 중 예·체능 분야 전국 규모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 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u>	제5조(장학생의 신청자격) <u>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u> 1. <u>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으로 성적이 우수하여 각 학교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 이 경우 속초시는 각 학교별로 선발인원을 배정하고 장학생 선발 결정은 장학회에서 한다.</u> 2. <u>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모범학생</u> 3. <u>고등학교 내신 성적 2등급 이내의 성적으로 지역 또는 일반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 신입생과 직전(直前)학년 성적이 평점 4.0 이상인 지역 또는 일반대학교 재학생. 단, 휴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u>

현행	개정안
6. <u>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고등학생·대학생은 신입생의 경우 직전(前) 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10 이내, 재학생의 경우 직전(前)학년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 고등학생 또는 직전(前) 학년 성적이 평점 3.5 이상인 대학생</u>	4. <u>예능·체능분야는 전국단위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대회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단, 직전학년 재학기간 중 상위입상 1개 부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전국단위 대회란 주최가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중안단위 단체(협회)이며, 도단위 대회란 주최가 도지사, 도교육감 및 도단위 단체(협회)를 말한다.</u>
제7조(장학금의 신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장학생 신청서와 <u>다음 각 호1에</u>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제7조(장학금의 신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장학생 신청서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정 입법예고

속초시 지역정보화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지역정보화를 효율적 추진하고 정보보호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함(안제 4조).
- 나. 매년 속초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속초시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함(안 제5조).
- 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역정보화위원회를 둠(안 제6조).
- 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향상과 시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화 추진(안 제11조).
- 마.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4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701/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정보관리담당(전화: 033-639-2462, FAX: 033-639-2420)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정보관리담당담당 (전화:033-639-24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 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속초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속초시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방안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방안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4항을 고려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같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 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속초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속초시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정보화 부서의 장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최대 3회까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사업의 총괄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시 지역정보화 정책과 기관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향상과 시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규정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속초시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속초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